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6. . . (제 회)	

사회적기업육성법
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김영훈 (고용노동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26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사회적기업의 건전한 발전과 공동 사업 수행을 위해 사회적기업 협의체를 만들고, 공제사업을 통해 민간이 자발적으로 공적 자금을 조직화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기업 육성법 개정에 따라 시행령의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가. 협회 설립에 관한 규정 신설 (시행령 제13조~제16조 신설)

나. 사회적기업 공제사업에 관한 규정 신설 (시행령 제17조~제21조 신설)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3조, 제13조의2 및 제14조를 각각 제22조, 제22조의2 및 제23조로 하고, 제13조 및 제14조부터 제21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3조(사회적기업협회의 설립인가 및 설립인가 취소) ① 법 제16조의3

제1항에 따라 사회적기업협회(이하 “협회”라 한다)를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회원 자격이 있는 사회적기업 10개소 이상이 발기인이 되어 회원 자격이 있는 사회적기업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정관을 작성하고, 창립총회에서 의결한 후 고용노동부령(이하 “부령”이라 한다)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설립인가를 받아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라 발기인에게 설립동의서를 제출하는 사회적기업의 주된 사무소는 「지방자치법」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시·통합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 및 특별자치도(이하 “시·도”라 한다) 중 10개 이상의 시·도에 분포하여야 한다.

③ 창립총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.

1. 정관
2. 사업계획과 예산
3. 임원의 선출

4. 설립 경비 등 설립에 필요한 사항

④ 창립총회의 의사는 제2항에 따라 설립동의서를 제출한 사회적기업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⑤ 발기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7일 이상 공고한 후 창립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.

1. 창립총회의 일시와 장소

2. 회원의 자격요건

3. 창립총회에서 의결하여야 할 사항

⑥ 창립총회의 의사(議事)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.

⑦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설립인가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협회에 통지하여야 한다.

⑧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청한 서류의 기재사항에 흠결이 있거나 첨부서류가 미비한 경우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.

⑨ 고용노동부장관은 협회가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인가의 조건에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그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.

제14조(지부 등의 설치) 협회는 사회적기업의 건전한 발전과 지역 기반의 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부 또는 지회를 둘 수 있다.

제15조(정관의 기재사항 및 변경) ① 법 제16조의3제3항제10호에서 “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”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.

1. 회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
2. 정관의 변경절차
3. 협회의 지부 또는 지회의 설치·운영에 관한 사항
4. 그 밖에 협회에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

② 법 제16조의3제3항 후단에 따라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부령으로 정하는 정관변경 신청 서류를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변경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, 신청서류 등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.

제16조(협회의 사업) 법 제16조의3제4항제5호에서 “그 밖에 사회적기업 활성화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”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.

1. 사회적기업에 대한 상담, 교육·훈련 및 정보 제공을 위한 사업
2. 사회적기업에 관한 조사·연구 및 홍보를 위한 사업
3. 회원의 복리후생 증진을 위한 사업
4. 그 밖에 협회의 목적에 부합한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

제17조(공제사업의 운용) ① 공제사업은 협회의 설립 목적과 자주성·책

임성의 원칙에 부합해야 한다.

② 협회가 지부 또는 지회가 있는 경우 지역별 계정을 둘 수 있다.

제18조(공제사업규정의 기재사항 등) 공제사업규정에는 법 제16조의4제3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공제 가입 대상 및 가입·탈퇴에 관한 사항.
2. 공제사업의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(공제사업의 운영을 위한 자금의 수입계획, 사용계획 등을 포함한다)
3. 공제사업 운영위원회의 위원 구성, 회의 운영 등 운영체계에 관한 사항
4. 공제금의 지급 등 공제계약의 집행에 관한 사항
5. 공제사업 운용실적의 공시에 관한 사항
6. 공제사업 운용 관련 분쟁 처리 절차에 관한 사항
7. 그 밖에 공제사업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19조(공제사업의 승인) ① 법 제16조의4제4항에 따라 협회가 공제사업의 승인을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.

1. 순자산이 3억원 이상일 것
2. 공제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이 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

② 법 제16조의4제2항에 따라 공제사업의 승인을 신청하려는 협회는 공제사업 승인 신청서에 공제사업규정과 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

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서류의 기재사항에 흠결이 있거나 첨부서류가 미비한 경우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.

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승인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협회에 통지하여야 한다.

⑤ 법 제16조의4제2항 후단에 따라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협회는 공제사업 승인 변경신청서에 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⑥ 고용노동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변경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, 신청서류 등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제3항을 준용한다.

제20조(공제사업의 건전성) ① 공제사업을 하는 협회는 공제사업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 말에 그 사업의 책임준비금을 계상(計上)하고 적립하여야 한다.

② 공제사업에 관한 회계는 협회의 다른 사업에 관한 회계와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.

③ 협회는 공제사업의 책임준비금을 운용할 때 안정성·유동성 및 수익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.

④ 협회는 공제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·의결하기 위하여 공제사업 운영위원회를 둔다.

⑤ 공제사업 운영위원회의 구성·자격 등 운영체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부령으로 정한다.

제21조(가입자 등의 보호) ① 협회는 공제계약의 내용을 가입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공제약관을 명확하게 정하고, 공제 가입 시 가입자에게 공제료·공제금·면책사유 등 주요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.

② 협회는 공제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지급을 지연하거나 거절하여서는 아니되며, 공제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감액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설명하여야 한다.

③ 협회는 책임준비금의 적립 등 공제금 지급능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④ 협회가 공제약관을 가입자에게 제공하지 않거나 그 중요 내용을 설명하지 아니한 경우 가입자는 가입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공제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.

별표 중 “(제14조 관련)”을 “(제23조 관련)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영은 2026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<u>제13조(사회적기업협회의 설립인 가 및 설립인가 취소) ① 법 제1 6조의3제1항에 따라 사회적기 업협회(이하 “협회”라 한다)를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회원 자격 이 있는 사회적기업 10개소 이 상이 발기인이 되어 회원 자격 이 있는 사회적기업 5분의 1 이 상의 동의를 받아 정관을 작성 하고, 창립총회에서 의결한 후 고용노동부령(이하 “부령”이라 한다)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 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설립인 가를 받아야 한다.</u> <u>② 제1항에 따라 발기인에게 설 립동의서를 제출하는 사회적기 업의 주된 사무소는 「지방자치 법」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시 · 통합특별시 · 광역시 · 특별자치시 · 도 및 특별자치도 (이하 “시 · 도”라 한다) 중 10개 이상의 시 · 도에 분포하여야 한 다.</u> <u>③ 창립총회에서는 다음 각 호</u>

의 사항을 의결한다.

1. 정관

2. 사업계획과 예산

3. 임원의 선출

4. 설립 경비 등 설립에 필요한
사항

④ 창립총회의 의사는 제2항에
따라 설립동의서를 제출한 사회
적기업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
하고 출석자 3분의 2 이상의 찬
성으로 의결한다.

⑤ 발기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
을 7일 이상 공고한 후 창립총
회를 개최하여야 한다.

1. 창립총회의 일시와 장소

2. 회원의 자격요건

3. 창립총회에서 의결하여야 할
사항

⑥ 창립총회의 의사(議事)에 관
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
다.

⑦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
따른 설립인가 신청을 받은 날
로부터 60일 이내에 인가 여부
를 협회에 통지하여야 한다.

⑧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

<신 설>

<신 설>

따라 신청한 서류의 기재사항에
흡결이 있거나 첨부서류가 미비
한 경우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
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.

⑨ 고용노동부장관은 협회가 목
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
인가의 조건에 위반하거나 기타
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
는 그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.

제14조(지부 등의 설치) 협회는
사회적기업의 건전한 발전과 지
역 기반의 협력 활성화를 위하
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
지부 또는 지회를 둘 수 있다.

제15조(정관의 기재사항 및 변경)

① 법 제16조의3제3항제10호에
서 “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
는 사항”이란 다음 각 호의 사
항을 말한다.

1. 회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
사항

2. 정관의 변경절차

3. 협회의 지부 또는 지회의 설
치·운영에 관한 사항

4. 그 밖에 협회에 운영 등에 관
하여 필요한 사항

<신 설>

② 법 제16조의3제3항 후단에 따라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부령으로 정하는 정관변경 신청 서류를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변경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, 신청 서류 등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.

제16조(협회의 사업) 법 제16조의 3제4항제5호에서 “그 밖에 사회적기업 활성화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”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.

1. 사회적기업에 대한 상담, 교육·훈련 및 정보 제공을 위한 사업
2. 사회적기업에 관한 조사·연구 및 홍보를 위한 사업
3. 회원의 복리후생 증진을 위한 사업
4. 그 밖에 협회의 목적에 부합한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인

<신 설>

<신 설>

정하는 사업

제17조(공제사업의 운용) ① 공제 사업은 협회의 설립 목적과 자주성·책임성의 원칙에 부합해야 한다.

② 협회가 지부 또는 지회가 있는 경우 지역별 계정을 둘 수 있다.

제18조(공제사업규정의 기재사항 등) 공제사업규정에는 법 제16조의4제3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공제 가입 대상 및 가입·탈퇴에 관한 사항.
2. 공제사업의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(공제사업의 운영을 위한 자금의 수입계획, 사용계획 등을 포함한다)
3. 공제사업 운영위원회의 위원 구성, 회의 운영 등 운영체계에 관한 사항
4. 공제금의 지급 등 공제계약의 집행에 관한 사항
5. 공제사업 운용실적의 공시에 관한 사항

<신 설>

6. 공제사업 운용 관련 분쟁 처리 절차에 관한 사항

7. 그 밖에 공제사업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19조(공제사업의 승인) ① 법 제16조의4제4항에 따라 협회가 공제사업의 승인을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.

1. 순자산이 3억원 이상일 것
2. 공제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이 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

② 법 제16조의4제2항에 따라 공제사업의 승인을 신청하려는 협회는 공제사업 승인 신청서에 공제사업규정과 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서류의 기재사항에 흠결이 있거나 첨부서류가 미비한 경우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.

<신 설>

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승인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협회에 통지하여야 한다.

⑤ 법 제16조의4제2항 후단에 따라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협회는 공제사업 승인 변경 신청서에 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⑥ 고용노동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변경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, 신청서류 등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제3항을 준용한다.

제20조(공제사업의 건전성) ① 공제사업을 하는 협회는 공제사업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 말에 그 사업의 책임준비금을 계상(計上)하고 적립하여야 한다.

② 공제사업에 관한 회계는 협회의 다른 사업에 관한 회계와 구분하여 정리하여야 한다.

③ 협회는 공제사업의 책임준비

<신 설>

금을 운용할 때 안정성·유동성
및 수익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
한다.

④ 협회는 공제의 운용 및 관리
에 관한 사항을 심의·의결하기
위하여 공제사업 운영위원회를
둔다.

⑤ 공제사업 운영위원회의 구성
·자격 등 운영체계에 관하여
필요한 사항은 부령으로 정한
다.

제21조(가입자 등의 보호) ① 협
회는 공제계약의 내용을 가입자
가 이해할 수 있도록 공제약관
을 명확하게 정하고, 공제 가입
시 가입자에게 공제료·공제금
·면책사유 등 주요내용을 설명
하여야 한다.

② 협회는 공제금의 지급사유가
발생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
그 지급을 지연하거나 거절하여
서는 아니되며, 공제금을 지급
하지 아니하거나 감액하는 경우
에는 그 사유를 설명하여야 한
다.

③ 협회는 책임준비금의 적립

<u>제13조</u> ~ <u>제14조</u> (생략)	<u>등 공제금 지급능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</u> <u>④ 협회가 공제약관을 가입자에게 제공하지 않거나 그 중요 내용을 설명하지 아니한 경우 가입자는 가입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공제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.</u> <u>제22조</u> ~ <u>제23조</u> (현행 제13조부터 제14조까지와 같음)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과	
연락처	(044) 202 - 7420